

#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
----------	----

제출년월일 : 2015.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가. 귀농인에게 한정된 지원 조례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활동 등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함.

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귀농인의 연령 제한, 신고 조항 등을 삭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 및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및 조례에 적용되는 범위 추가

-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각 조항별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확대

나. 상위법 미 근거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제9조)

- 귀농시 읍·면장 신고 사항 및 귀농인 연령 만60세 미만 등
-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신고서 삭제

다. 귀농·귀촌인 지원 사항 보완 및 신설 (안 제10조 관련)

-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집수리 지원 등 현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무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15-556 (2015. 5. 19 ~ 2015. 6. 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5129, 2015. 5. 13)
- 3) 부패영향평가 : 권고사항 (기획감사실-5618, 2015. 5. 27)
  - 권고사항 : 제10조 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요건, 선정방법, 범위, 방법 등은 매년 공고하거나 규칙으로 정하여 투명성과 일관성을 갖출 것을 권고함.
  - 이행 계획 : “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계획“ 등 내부 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평창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투명성과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음.
-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주민생활지원과-29270호, 2015. 5. 14)

##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귀촌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자로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평창군귀농인지원위원회”를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귀농·귀촌 교육훈련, 교육장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귀농인”을 각각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같은 조 제5호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제13조 중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1.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 4. (생략)

④ (생략)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귀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5. (생략)

제9조(신고) ①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귀농인 신고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③ 귀농인은 신고 당시 만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원회(이하-----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귀농·귀촌-----  
-----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기능) -----  
귀농·귀촌인-----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지원) -----귀농·귀촌인-----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 4. (생략)
  -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
- <신설>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귀농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

-----  
-----  
-----.

- 1. 2. (현행과 같음)
- 3. 귀농·귀촌 교육훈련, 교육장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4. (현행과 같음)
- 5.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 6. 그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사후관리) ① -----귀농·귀촌인-----  
-----  
-----.

② -----  
-----  
-----귀농·귀촌인-----  
-----  
-----.

제12조(지원 취소 등) -----  
-----귀농·귀촌인-----  
-----

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준용) 귀농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5. ----- 귀농·귀촌인 -----  
-----  
-----

제13조(준용) 귀농·귀촌인 -----  
-----  
-----  
-----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 추가 비용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추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 4. 작성자

작성자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연락처	(033) 330-1304

# 관계법령 발췌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130524호(수산업법)]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